

2018학년도 교내대회 및 수상계획

1. 방침

- 가.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8조2항2호(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)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다.
- 나.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(수상비율, 시행일, 담당부서, 공개방식 등)을 기재한다.
- 다.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다. 단,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 경우에도 입력할 수 있다.
- 라.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% 이내로 권장하되,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다.
- 마.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10일 이전에 대회 요강(시기, 운영·심사방법, 수상 인원 등)을 공개하도록 한다.
 - ※ 공개 방법은 학생/학부모 서비스,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학교·학급 게시, SNS 등을 활용한다.

2. 교내대회 및 수상계획

순	수상명	시행(월)	참가대상	수상비율	담당부서	공개방식
1	백일장	4월	전교생	20%이내	국어과	학급게시
2	청소년과학 탐구대회	4월	전교생	27%(4명)	과학과	학급게시
3	독서논술	6월	전교생	20%이내	국어과	학급게시
4	시화	10월	전교생	20%이내	국어과	학급게시
5	독서골든벨	12월	전교생	20%이내	국어과	학급게시
6	교과우수상	학기말	과목별 수강자	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	연구부	
7	1년개근상 1년정근상	학년말	전교생	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	교무부	
8	졸업식관련 수상 (학교장상, 효행상, 봉사상, 선행상, 기능상, 공로상, 3년개근상, 3년정근상)	학년말	3학년	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	교무부	